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7] <신설 2024. 3. 29.>

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703		양파·샬롯(shallot)·마늘·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703	90	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	대파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0	3,000톤